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2025. 6. 13.

사 회 기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540호로 2025년 5월 30일 박현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영등포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회공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사회공헌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사회공헌인증,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아.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 6. 3.~2025. 6. 10.)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제정 배경 및 취지

- 최근 개인주의의 심화, 경제 침체, 세대·계층·성별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연대감 및 공동체 의식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개인, 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 내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조문 해석의 일관성 및 명료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장려 및 활동여건 조성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사회공헌시책)는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홍보 등 규정하여 사회공헌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구체화함.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회공헌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임.
- 안 제9조(인증 사후관리)는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비용 등의 지원)는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1조(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는 사회공헌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우수 공헌자 인증 및 포상, 활동지원센터 설치 등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사회공헌 인증 및 사회공헌주간 운영은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회공헌시책 추진 및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율적 연대와 사회기여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자료

## 1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